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11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김상훈·강대식·김소희

김선교 • 서명옥 • 고동진

박충권 • 이달희 • 박수영

권영진 · 신동욱 · 김대식

이헌승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,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,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 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,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 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7조, 제 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본문 중 "순직한 사람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"를 "다음 각 호의"로, "해당되는"을 "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순직한 사람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- 3.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) ① 소방청장은 소방경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 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,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승진 우대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2명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 은 61세, 자녀가 3명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2세, 자녀가 4명 이상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3세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	제17조(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
진) 소방공무원으로서 <u>순직한</u>	진) <u>다음 각</u>
사람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	호의
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	
<u>지의</u> 어느 하나에 <u>해당되는</u> 사	<u>해당하는</u>
람에 대해서는 제14조에도 불	
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	
수 있다. 다만, 소방위 이하의	
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	
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	
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	
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<u>1. 순직한 사람</u>
<u><신 설></u>	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
	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
	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<u><신 설></u>	3.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
	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
	<u>하는 사람</u>
<u><신 설></u>	제17조의2(다자녀 양육 소방공무
	원에 대한 승진 우대) ① 소방
	청장은 소방경 이하 공무원을

제25조(정년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~ ⑤ (생 략)

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, 가점 부 여 등 구체적인 승진 우대 조 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(정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2명인 소방공무원의 연 령정년은 61세, 자녀가 3명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2세, 자녀가 4명 이상인 소방공무원 의 연령정년은 63세로 한다.

③ ~ <u>⑥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)